

자격증 및 면허증 소지자의 가산점(제27조제1항 관련)

1. 자격증 및 면허증의 가산점

계 급	4급	5급	6급	7급	8급	9급
자격증 및 면허증						
기술사 및 기술사 상당	1.5	2.5	2.5	2.5	2.5	2.5
기사 및 기능장			2.5	2.5	2.5	2.5
산업기사					2.5	2.5

비 고

1. 각 자격증별 세부적인 종류는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자격증 및 「자격기본법」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증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2. 기술사 상당에 해당하는 자격증 및 면허증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.
 - 가. 수사직렬: 변호사 및 법무사
 - 나. 건축직렬: 건축사
 - 다. 함정기관직렬: 1급 또는 2급 기관사
 - 라. 항해직렬: 1급 또는 2급 항해사
 - 마. 약무직렬: 약사
 - 바. 그 밖에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증 및 면허증 중 기술사 자격에 상당하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증 및 면허증

2. 해당 계급 관련 자격증 및 면허증 등급

계 급	5급 이상	6·7급	8·9급
자격증 및 면허증	기술사 및 기술사 상당	기사 및 기능장	산업기사

3. 가산점의 산정방법 등

- 가. 가산점 산정은 취득한 자격증 및 면허증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한다.

나. 자격증 및 면허증을 소지함으로써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경우,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 및 필기시험에서 가산점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 및 면허증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하지 아니한다.